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. 6. 16 선고 2019가단524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

2. D

3. E

4. F

5. G

변론 종결2020. 5. 19.

판결 선고2020. 6. 16.

## 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군산시 H 전 1,236㎡ 중 별지 "도면" 표시 25, 26, 16, 17, 18,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 112㎡의 112/1236 지분 중 각 1/5 지분에 관하여 2018. 2. 27.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[다만 피고들은 주위적 청구취지로, 주문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8. 10. 20.자

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, 제1예비적 청구취지로 2018 2. 27.자  
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각 이행을 구한다고 기재하였다].

## 이 유

원고가 1968. 10. 20. I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"도면" 표시 25, 26, 16, 17, 18, 25의 각 점을  
순차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 112㎡(이하 '이 사건 토지 부분'이라 한다)를 매수하고, 현재까지 위  
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, 피고들의 피상속인 J이 1984. 3. 5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.  
2. 24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8. 2. 1.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 
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,124㎡를 K에게 매도하고, 같은 달 27일 K에게 이 사건 토지  
중 1124/123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, J이 2006. 10. 3. 사망하였고, 그에  
따라 그 처 L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법정상속지분별로 J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, 이후 L도  
2017. 12. 21.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법정상속지분별로 L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한  
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 
것으로 본다.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20년  
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중  
원고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112/1236 지분 중 각 1/5 지분에 관하여 2018. 2. 27.자  
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 
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.

**판사장한홍**

별지